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에 대해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는 분께

오오타구 구민부 과세과

2024년도 (2023년 중의 수입) 이후의 특별구민세·도민세 (이하 “주민세”) 를 신고하실 때, 일본 국외 거주자 (이하 “국외거주자”)인 친족에 관하여, 부양공제 등 (부양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만 16세 미만이거나 동일생계 배우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친족과 관련된 “친족관계서류”, “유학비자 등 서류”, “송금관계서류” 또는 “38만엔 송금서류”를 주민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합니다.

단, 급여 등의 원천징수 및 연말조정 시 급여 등의 지불을 받은 거주자가 급여 등의 지불자에게 위에 열거한 서류를 제출, 제시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양공제 관련 확인 서류》

국외거주자인 친족의 연령 등의 구분		주민세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만16세이상 30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친족관계서류, 송금관계서류
만30세이상 70세미만	① 유학으로 인해 국내에 주소 및 거주지가 없어진 분	친족관계서류, 유학비자 등 서류, 송금관계서류
	② 장애자	친족관계서류, 송금관계서류
	③ 귀하로부터 그 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만엔 이상 받으신 분 (상기①~③ 이외의 친족)	친족관계서류, 38만엔 송금서류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와 관련된 확인 서류 및 만16세 미만 또는 동일생계배우자인 경우의 확인 서류》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합니다.

◎“친족관계서류”란

“친족관련서류”란 다음 (1) 또는 (2)의 서류(일본어로 번역된 문서도 필요)로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귀하의 친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1)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일본 국적인 경우  
“호적부표 사본” 등 일본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 및 국외거주자인 친족의 여권 사본.
- (2)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외국 거주자인 친족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주지 기재가 있는 것.

【주요 유의사항】

- 1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는 예를 들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해당합니다.
- 2 하나의 서류만으로는 외국 거주자인 친족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주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귀하의 친족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서류를 조합해 증명해야 합니다.
- 3 친족관계서류는 국외거주자인 친족의 여권 사본을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합니다.
- 4 부양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유학비자 등 서류”란

“유학비자 등 서류”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아래의 (1) 또는 (2)의 서류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로, 그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외국에서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그 외국에 재류함으로써 일본 국내에 주소 및 거주지가 없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외국에서 사증(비자)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2) 외국에서 재류카드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송금관계서류”란

“송금관계서류”란, 다음의 (1) 또는 (2)의 서류(일본어 번역문도 필요)로, 귀하가 그 해에 국외거주자인 친족 각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그 금융기관이 행하는 외환거래를 통해 귀하가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금전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2) 이른바 신용카드 발급사가 발행한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그 신용카드 발급사가 교부한 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지불한 것에 대해 그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전을 귀하로부터 수령하거나 수령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요 유의사항】

- 1 송금관계서류에는 예를 들어 다음 (1) 또는 (2)의 서류가 해당합니다. 또한 지인에게 의뢰해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송금관계서류가 없기 때문에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1) 외국송금의뢰서 부분
    - ※ 그 해에 송금한 외국송금의뢰서 부분이어야 합니다.
  - (2)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 ※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란, 귀하가 신용카드 발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거주자인 친족이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신용카드로 그 이용대금을 귀하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른바 가족카드)에 대한 이용명세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이용명세서는 가족카드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국외거주자인 친족에 관한 송금관계서류로 취급합니다.
    - ※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는 신용카드 이용일에 해당하는 연도분의 송금관계서류가 됩니다.
- 2 복수의 국외거주자인 친족에 대해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친족별로 송금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국외거주자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일괄 송금했을 때 그 송금관계서류는 배우자에 관한 송금관계서류에는 해당하지만 자녀에 관한 송금관계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송금관계서류의 경우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는 연도에 송금 등을 실행한 모든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합니다.

단, 동일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송금 등을 연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제출과 그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그 해 처음과 마지막 송금 시의 송금관계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함으로써 그 이외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출 또는 제시를 생략한 송금관계서류를 귀하가 보관해야만 합니다.

## ◎“38만엔 송금서류”란

“38만엔 송금서류”란, “송금관계서류”에서 귀하로부터 국외거주자 친족 각자에게 그 해에 지불한 금액의 합계액이 38만엔 이상인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

- 38만엔 송금서류는 부양공제 적용을 받는 해의 송금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동일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송금 등이 연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의 제출과 그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그 해 첫번째와 마지막 송금 등을 한 때의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함으로써, 그 이외의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의 “그 해 첫번째와 마지막 송금 등을 한 때의 서류”에 관련된 송금의 금액 합계가 38만엔 미만인 경우는, 그 “그 해 첫번째와 마지막 송금 등을 한 때의 서류” 뿐 아니라, 그 국외거주자인 친족에게 그 해의 송금 금액의 합계가 38만엔 이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해 최초와 최후의 송금 등을 한 때의 서류”에 관련된 송금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엔인 경우, 이 서류 뿐 아니라, 송금 합계액이 8만엔 (38만엔 - 30만엔) 이상인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제출 또는 제시를 생략한 38만엔 송금서류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내지는, 2023년1월1일 현재의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